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7397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 의안명 | 대표 발의자 | 발의일 | 경과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413호) | 임종득의원 | 2024. 8. 30. |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상정 및 축조심사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494호) | 최형두의원 | 2024. 11. 12. | 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나.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12.26.)에 상정 및 축조심사 |

-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2. 25.)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훈련·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나. 교육·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9조 및 제71조의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제4항·제5항”을 “제1항·제2항·제5항·제6항”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를 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를

“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4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으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훈련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항의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된 경우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2. 전파차단장치 이용결과의 제출

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하여는 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6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수수료

제6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4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자

제71조의2제5항 중 “자에게”를 “자 및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에

계”로 한다.

제72조제2항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의4(종전의 제4호의3)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제78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과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p> <p>1. (생략)</p> <p>2. 무선국 개설허가는 <u>제24조제3항</u> 본문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다만,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 한다.</p> <p>④ (생략)</p> <p>제24조(검사)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 <p>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p> <p style="padding-left: 20px;">·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4조제4항</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검사)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이하 “무선국자기적합확</u></p> |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생략)

<신 설>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4조제5항-----

-----.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교육, 훈련, 장비의 정비 또는 시험(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장소에서의 사용으로 한정한다)하려는 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

<신 설>

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계획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간섭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거나, 교육·훈련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할 것을 명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계획에 따라 전파차단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간섭 등이 발생할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4

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하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경우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전파차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 제4항·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조치, 제8항에 따른 인가와 인가의 면제, 제9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력의 기록·보관, 제10항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

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 적혀있는 준공기한(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4. 4의2. (생략)

<신설>

4의3.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검사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지연일수는 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까지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 신청 후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5.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24조

제3항-----

4.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

5. 제24조제5항 및 제6항-----

를 받지 아니하고 전파차단장
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 6. (생략)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
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
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
·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 6. (생략)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2. (생략)

<신설>

--

2. ~ 6. (현행과 같음)

제86조(벌칙) -----

-----.

1. 제24조제5항 및 제6항-----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
국자기적합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2. (생략)

3. ~ 6. (생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